정 관

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

###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(목적)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.운영 함으로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명칭) 이 기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 3 조(수혜대상) ① 기금의 수혜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근로자와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.
  - ② 기금의 수혜대상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직접 도급하는 업체 근로자 및 회사에 파견된 파견업체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다.
- 제 4 조(법인격) 이 기금은 기타특수법인으로 한다.
- 제 5 조(사무소) 기금은 주된 사무소를 공사 본사내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 제 2 장 기금의 기관

- 제 6 조(기금의 기관) 기금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.
  - 1. 혐의회
  - 2. 이사 및 감사
- 제 7 조(협의회의 구성)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  - ② 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8 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기금 운영.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협의.결정한다.

- 1.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
- 2.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- 3. 예산, 결산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
- 4. 정관의 변경
- 5.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
- 6. 기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
- 제 9 조(협의회 의장등) ①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,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  -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(이하 "근로자위원"이라 한다) 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(이하 "사용자위원"이라 한다) 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각 1인을 둔다.
- 제 10 조(회의소집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  - ②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-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.장소 및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④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2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(정족수)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2 조(회의의 공개)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 13 조(회의록 보관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.날인하고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  - 1. 개최일시 및 장소
  - 2. 출석위원
  - 3.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
  - 4. 기타 토의사항
- 제 14 조(이사 및 감사) ①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각 3인이내의

- 이사와 각각 1인의 감사를 둔다.
- ②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,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.
- 1. 기금의 관리.운영
- 2. 예산의 편성 및 결산
- 3. 사업 보고서의 작성
- 4. 정관이 정하는 사항
- 5. 기타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
- ③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- ④ 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.
- 제 15 조(이사등의 임기) ①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정에 의하여 궐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② 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  - ③ 이사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- 제 16 조(이사등의 신분) ① 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, 무보수로 한다.
  - ② 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  - ③ 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의 기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.

# 제 3 장 기금의 재정

- 제 17 조(기금의 출연) ① 공사는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.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다.
  -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.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  - ③ 당해 사업연도에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,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19조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(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 18 조(출연시기) ① 공사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에 출연하여야 하며, 제17조 제2항의

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기금의 사업)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- 1.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등 근로자재산형성을 위한 지원
- 2.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지원
- 3.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
- 4. 체육.문화활동의 지원
- 5.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
- 6.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
- 7.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
- 8. 근로자의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 지원
- 9. 근로자 가족의 건강진단비 지원
- 10. 근로자 본인의 자기개발교육비 지원
- 11. 출산장려 및 보육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/육아비 지원
- 12. 명절, 생일, 결혼기념일 등 기념품 지원
- 13.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
- 14.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
- ②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.
- 1. 근로자 주택 신축.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
- 2.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
- 3.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자금 대부
-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(이하 "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"라 한 다)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 20 조(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관계) 기금설치 당시에 다른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.결정에 의하여 기금에 다른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,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.
- 제 21 조(기금의 증식)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.
  - 1.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
  - 2.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
 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

유가증권의 매입

- 4.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
- 5.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
- 6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증식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
- 제 22 조(기금의 부동산 소유) ①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.
  - 1.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
  - 2. 사내구판장의 소유
  - 3. 휴양콘도미니엄의 소유
  - 4.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복지시설의 소유
  - 5.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제21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도 공사 사장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으로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이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한다.

## 제 4 장 기금의 회계

제 23 조(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에 따른다.

- 제 24 조(회계원칙) ①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.
  - ②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.
  - ③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,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.
- 제 25 조(예산과 결산) ① 이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매회계연도 개시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- 1. 사업계획서
  - 2. 추정대차대조표

- 3. 추정손익계산서
- ② 이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사업보고서
- 2.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
- 3.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
- 4. 잉여금 처분 계산서
- ③ 이사는 당해연도의 운영상황.결산서.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26 조(기금의 관리.운영상황의 공개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보에의 게재, 사내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보고서
  - 2. 대차대조표
  - 3. 손익계산서
  - 4. 감사보고서
  - 5. 혐의회 회의록
  - 6.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 27 조(서류보존)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장 기금의 해산 및 청산

- 제 28 조(기금의 해산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.
  - 1. 사업의 폐지
  - 2.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의 합병
  - 3.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의 분할.분할합병
- 제 29 조(기금의 해산신고) ① 기금이 해산하는 때에는 협의회가 청산인이 된다.
  -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 30 조(기금의 청산) ①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장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, 퇴직금,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재산이

있을 때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협의.결정에 의하여 공사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 등에 귀속시킨다.
- 제 31 조(정관변경)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 32 조(준용규정) 기금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-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(경과조치) "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" ('83.5.6, 임금1451-11593)에 의하여 공사가 기 설치운영한 "한국방송광고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"의 자산 및 제반권리는 이 정관에 의한 기금으로 승계된다.
- 제 3 조(회계년도) 기금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99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 4 조(준비위원) 기금의 준비위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성명과 주소를 이 정관말미에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정관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정관은 20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